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97호
2. 발 의 자 : 김용연 의원
3. 발의일자 : 2021. 5. 28.
4. 회부일자 : 2021. 6. 2.

II.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3.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5.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6.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7.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8.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9.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10.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 추진 및 녹색제품 관련 정보 공유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11.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등의 업무평가 반영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의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김용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97호로 발의되어 2021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오늘날 세계는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의 가속화, 그리고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및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규제하고자 유엔기후변화협약¹⁾을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국회에서

1)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85개국의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에 참여해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했고,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기본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기로 하는 ‘교토기후협약’을 하였음. 이후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지구 평균기온상승을 2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2020년부터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하였음.

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 지양과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탄소중립(저탄소 실현) 및 지속가능한 녹색 생산·소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²⁾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처럼 관련법과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등을 환경부에 매년 보고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 정책은 대부분 자체 계획이 아닌 정부의 기본계획과 법에 따른 조치사항이 대부분인바, 자체적으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1]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구매 실적

(기준: 2020.9.29.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구매	녹색구매	구매율(B)
국가기관	746,369	420,490	56.34
지 자 체	3,678,690	1,520,459	41.33
교육청	1,647,920	1,086,889	65.96
서울특별시교육청	51,884	33,887	65.31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계획,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등

2)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계획기간:2021~2025’, 환경부

서울시교육청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그 취지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구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9개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미제정 (8개 교육청)
기관명	경기,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충북, 제주, 강원, 전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적용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계획과 이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구매실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8조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녹색제품의 구매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과 정보제공, 그리고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13조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 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³⁾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적용대상기관에 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기관을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와 법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기관에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은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공립학교에 준할 정도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0-0451)⁴⁾, 법 제2조제2호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6.

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51,(2011.02.17.)

'~(중략)~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자의 특별한 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건학정신에 따라 사학을 설립·운영할 자유는 물론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9 판결례).~(이하 생략)'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구매촉진계획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의견(안 제5조~안 제6조)

○ 안 제5조제1항은 법 제3조제1항6)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은 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6조제1항은 법 제8조제1항7)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2항은 구매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녹색제품에 관한 구매촉진 및 구매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은 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동시에 이에 포함되어야 할 구매계획과 제도 개선 및 교육과 홍보 등에 대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녹색제품 구매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구매의무에 관한 의견(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6조8)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

6)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7)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8)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으로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제품이 녹색제품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북 또는 매뉴얼 등의 제작을 통해 녹색제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녹색구매지원센터에 관한 의견(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연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증진 사업 추진과(안 제1항) 정보공유(안 제2항), 교육(안 제3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⁹⁾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아직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다만 서울시는 현재 센터의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선정¹⁰⁾하는 실제적인 과정에 있는바, 향후 센터가 설립·운영될 경우 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센터 설립 및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센터의 이용에 관

9)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10)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455호.(2021.5.17.)

가. 사업명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나. 사업기간 : 2021.7.1 ~ 2023.2.28.(1년 8개월)

다. 위탁금액 : 200백만원

라. 접수기간 : '21.6. 7(월), 09:00~18:00

마.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일시 : '21. 6. 15(화) 14:00 예정

하여 상호협력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센터의 활용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 외에 교육(안 제9조), 구매 문화 증진(안 제10조), 정보제공(안 제11조),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안 제11조), 평가 및 보상(안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사안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588, 2021.6.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9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